

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 구제

유효기간 갱신 기준 완화 등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 확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



국무회의의 의결 2021.6.29.

시행 2021.7.6.

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



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
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!

석면피해구제제도란?

개요

환경적인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
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
석면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

대상질병



악성
중피종

원발성
폐암



석면폐증



미만성
흉막비후

적용대상

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
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
(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)

구제급여 종류 및 지급금액

지급대상	급여항목	내용	금액('21년 기준)	
피인정자	요양급여 (의료비)	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	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	
	요양생활수당	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(매월 지급)	악성종피종 원발성폐암	1,466,830원/월
			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1급	1,056,120원/월
			석면폐증2급	704,080원/월
			석면폐증3급	352,040원/월
피인정자 유족	구제급여 조정금	피인정자 사망 시 특별유족 조위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	(특별유족조위금)- (이미 지급된 요양급여+요양생활수당)	
	장례비	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	2,770,000원	
특별유족	특별유족 조위금	피해 인정 전 사망한 석면피해자의 유족(특별유족)에 대한 조위금	악성종피종 원발성폐암	41,550,000원
			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1급	20,775,000원
			석면폐증2급	13,850,000원
			석면폐증3급	6,925,000원
	특별장례비	특별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	2,770,000원	

한 눈에 보는 주요 개정 내용

	개정 전	개정 후
유효기간 갱신 기준	유효기간의 만료 전 석면질병이 나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	석면질병이 나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 , 또는 '중대한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' 로 기준 완화
요양급여 지급 기준일	피해인정 신청일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요양급여	석면질병 진단일 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요양급여
특별유족 신청기한	석면질병 사망 후 5년 이내	석면질병 사망 후 15년 이내

개정1

유효기간 갱신 기준 완화

현행

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**석면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**

유효기간 중 석면질병 관련 치료 내역이 없는 경우 **유효기간 만료로 지원 중단**

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와 **석면질병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빙서류,**
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

개정

※ 개정안의 '중대한 후유증'은 다음 페이지 참고

수술 등 치료과정에 발생한 **후유증이 중대**하여
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경우도 **유효기간갱신 기준에 추가**

중대한 후유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,

중대한 후유증으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서는

'중대한 후유증'의 입증서류

(진단서, 진료기록부, 폐기능장애 검사결과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함

개정1

'중대한 후유증'이란?

중대한 후유증(시행령제6조)

- 1 악성종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
- 2 암성 흉막염
- 3 암성 림프관증
- 4 폐기능 장애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
-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 65밀리미터수은주(mmHg)이하인 후유증
- 6 석면질병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

개정2

요양급여 지급 기준일 확대

현행

석면피해 인정 신청일 이후 석면질병 치료비부터 지원되어
질병 발생 초기에 치료비용은 지원 어려웠음

개정

석면질병 진단받은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
요양급여 지급기준일을 확대

석면질병 진단일 입증 서류(진단서, 진료기록부)*를
제출하여야 함

* 석면폐증과 미만성 흉막비후에 한해 1회 제출 필요,
악성중피종과 폐암은 피해인정 신청 시 진단서가
제출됨에 따라 불필요



개정3

특별유족 신청기한 연장

현행

특별유족* 신청은
법 시행일(11.1.1)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**'5년'**이내

*석면피해인정 신청 전 혹은 인정을 받기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

개정

법 시행일('11.1.1)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
'15년'으로 신청기한 연장

